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6. 18 선고 2024가단11039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6. 18.

주 문

-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B 사이에 2022. 8. 31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22. 9. 15. 접수 제76495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판결)

판사 박이규

별지